

#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## 주 의 요 구

제 목 산림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적정

기 관 명 광주광역시, 동구, 서구, 남구, 북구, 광산구

내 용
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의2호에 따르면 도시림·생활림·가로수의 조성·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, 산림사업법인이거나 예외적으로 산림사업이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상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조경공사업자나 조경식재공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
그리고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을 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입찰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및 5개 구에서는 아래 [표]와 같이 140건의 도시림 조성사업 입찰 공고 시 참가자격을 조경공사업, 조경식재공사업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한정하여,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, 도시림 등 조성 산림

사업법인 등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.

[표] 도시림 조성사업 참가자격 공고 현황(2014~2017)

기 관	년도	건수	조경공사업	조경식재공사업 등	비 고
	합계	140	4	136	
광주광역시	소계	4		4	
	2015	1		1	○○○○관리소
	2016	1		1	○○○○사업소
	2017	3		3	○○○○사업소
동 구	소계	16		16	
	2014	3		3	
	2015	5		5	
	2016	6		6	
	2017	2		2	
서 구	소계	23		23	
	2014	7		7	
	2015	7		7	
	2016	8		8	
	2017	1		1	
남 구	소계	15	2	13	
	2014	3	1	2	
	2015	4		4	
	2016	5		5	
	2017	3	1	2	
북 구	소계	32	2	30	
	2014	7		7	
	2015	10	2	8	
	2016	14		14	
	2017	1		1	
광산구	소계	49		49	
	2014	21		21	
	2015	17		17	
	2016	8		8	
	2017	3		3	

※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

조치할 사항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광주광역시장, 동구청장, 서구청장, 남구청장, 북구청장,  
  광산구청장은

[주의] 앞으로 산림사업 입찰 공고시 입찰 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